



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

중증환자, 신생아, 장애인 등 8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

- 1.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,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.
- 2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며, 제형 당뇨 관리소모품, 신생아 호흡곤란중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.
- 3. 장루·요루 환자(장애인)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,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.

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행

- 3개의 사회보험공단(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)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, 국민연금 및 고용·신재보험 업무 중 유사·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(통합고지서 발부, 통합보험료 수납, 통합보험료 채납관리)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된다. 무고지서 납부, 편의점 납부, 모바일 납부, 신용카드사 자동이체, 민원포탈 등 납부방법이 다양해진다.

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(24,450명)까지 확대

-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는데,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-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, 정밀진단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한다.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.(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, 차상위 계층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)

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 확대



2011년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 원(기초 270만 원)에서 180만원(기초 300만 원)으로 확대하고,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(단, 4회차 지원은 100만 원 범위)로 확대된다.

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



2011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(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·재산 기준)이 74만 원(118.4만 원)으로 4만 원 인상된다.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'10년 375만 명에서 '11년 387만 명으로 12만 명 확대된다.

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확대



1. '11년 1.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~40만 원이 지원된다. 또한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% 이하에서 70%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.
2. '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 원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 대상이었으나, '11년에는 450만 원(잠정치, 1월 중 확정, 3.1부터 적용 예정)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.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, 75%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%를 감액했던 '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. 또한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.

출처 | 보건복지부 홈페이지, www.mw.go.kr